

제 4 1 7 호

1973. 11.2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이. 인공비닐을 이용한 과수보호 필름소독 방법
제 804 호 : 서울특별시 가스 공급조례 중 개정 조례	3
제 805 호 : 새 마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면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	3
◎ 고 시	서울특별시 시민과장
제 177 호 : 도시계획 (도로) 지적변경승인	4
제 17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 (신설)	4
◎ 공 고	
제 214 호 :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변경 및 공고	5
제 215 호 : " " " 변경 공고	6
제 216 호 : 도시계획 (재개발촉진지구) 지정 열람 공고	6
◎ 사 령	7
◎ 정 정	9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장  
1973년 11월 2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04 호

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 
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제 1 항중 ◊공급관과 내관의  
공사비는 ◊을 ◊공급관과 내관의  
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◊으로 한  
다.

제 8 조 제 1 항중 ◊공사비를 ◊을  
◊공사비 및 설계수수료 300원을  
로 하고 동조에 ◊제 3 항 ◊을 다  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3) 설계수수료는 다음의 경우를  
제외하고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 
한다.

1.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때.

2. 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신  
청을 취소한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새마을공  
장에 대한 취득세면세에 관한 조례  
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장  
1973년 11월 2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05 호

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세에  
관한 조례중 개정조례

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세에  
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중 ◊농가공산품을 생산하기  
위하여 새마을공장을 신축한 경우  
에는 ◊을 ◊농가공산품 생산용 새  
마을공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 
부동산에 대하여는 ◊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

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지정을 받은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용 새마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7 호

도시계획 (도로) 지적변경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 (도로) 지적을 일부변경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(73. 4. 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,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. 11. 22.

서울특별시 장

노 선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기정	중로	1	47	20	9,500	미 아 동	수유동제 4 순환선	
변경	〃	1	47	20	9,500	〃	〃	지적변경승인

별첨 : 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보관함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 
일부변경 (신설)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(신설)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(73. 4. 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. 11. 24.

서울특별시 장

로 선 변 경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7	6	106	와룡동 1 - 352 (소 3 - 6 교점)	와룡동 1 - 352 (소 3 - 4 교점)	현지 개량 와룡지구 일부 위치 변경
변경	"	3	7	6	72	"	"	
기정	"	3		6	110	신당동 85-362	신당동 80-99	현지 제량 신당 7 동 지구 일부 변경 (제 단 설치)
변경	"	4		4	110	신당동 85-362	"	
신설	"	4	2	4	150	흑석동 28 - 3	흑석동 산 92-1	현지 개량으로 신설
기정	"	3		6	370	동작동 69 - 3	동작동 62-16	
변경	"	3		6	520	" 69 - 3	" 산 11-3	
기정	"	3		6	220	" 67 - 4	" 63-1	
변경	"	3		6	220	" 67 - 4	" 63-1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14 호

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 
업체변경및공고

당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

상호(기업체명), 대표자변경사항을 서  
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 
지정및 자금지원요령 제7조의 규정에  
의하여 다음과같이 변경공고 한다.

1973. 11. 1

서울특별시장

1. 변 경
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	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
503	주식회사 대아산업 공사	김학서	성북구 하월곡 동 88-64	자수 뿌링	503	성일산업 주식회사	성일기	성북구 하월곡 동 88-64	자수 직물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15호

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 
변경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변경공고한다.

당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 
상호(기업체명)및소재지 변경사항을

1973. 11. .

서울특별시장

1. 변경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
455	한성주물제작소	김정오	성동구 응봉동 150-2	나전철기	1504	한성공예산업사	김정오	영등포구내발산동 53-6	나전철기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16호

도시계획(재개발촉진지구)  
지정열람공고

발촉원지구로 지정되었기 동법시행령제 3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공고한다.

1.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충정로1가의 주로, 순화동, 봉래동지구(서울역-서대문)의 9개지구가 특정지구 개발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, 재개

2. 판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, 중구청, 종로구청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차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인다.

가. 개발촉진지구명칭, 위치및면적

지구명	위치	면적	비고
1. 서울역-서대문 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충정로1가, 의주로1가, 순화동, 봉래동1가의 일부지역	98,951 <sup>m</sup>	재개발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
2. 태평로2가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의 일부지역	31,400 <sup>m</sup>	〃
3. 남대문로3가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중구, 남대문로3가 남창동의 일부지역	9,400 <sup>m</sup>	〃
4. 을지로1가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남대문로1가 일부지역	21,860 <sup>m</sup>	〃
5. 남창동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의 일부지역	14,850 <sup>m</sup>	〃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비 고
6. 소공재개발 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, 태평로 2 개의 일부지역	13,220 ㎡	재개발지구 특정 가구 정비지구
7. 장교재개발 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, 수포동 을지로 2 개의 일부지역	43,900 "	"
8. 을지로 5,6가 재개발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중구, 을지로 5, 6 개의 일부지역	70,000 "	특정 가구 정비지구
9. 청량리재개발 촉진지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동 일부지역	92,000 "	"
10. 연건재개발 촉진지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일부지역	41,000 "	"
계	10 개 지역	437,581 "	

나. 재개발 촉진지구 존속기간 : 지정  
정일로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

1973.11.20.

서울특별시장

사 령

운수3 과장에 임함.

보건행정과장 서기관 윤백영

시설관리과장에 임함.

사회과장 서기관 이상억

보건행정과장에 임함.

도시가스지방  
사업소장 서기관 박승덕

사회과장직무대리에 임함.

© 1973.11.24.

회계과장 서기관 서연호  
공무원교육원교수부에 임함.

운수3과장 서기관 이재환  
회계과장에 임함.

시설관리과장 서기관 신현석

<p>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수부 사무관 박형원</p> <p>도시가스사업소장 직무대리에 임함.</p> <p>서대문구 지방행정 세무2과장 사무관 이경구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.</p>	<p>7.30 자 (발령제 691 호) 징계 처분 (감봉 1월) 을 동일자로 변경 전책에 처함.</p> <p>성동구 지방행정 백양기</p> <p>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. 8.18 자 (발령제 790 호) 징계 처분 (파면)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월에 처함.</p>
<p>◎ 1973.11.27.</p>	
<p>전남보성군 지방행정기 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4 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도봉구 지방행정 송태영</p> <p>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. 7.30 자 (발령제 691 호) 징계 처분 (파면)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월에 처함.</p>
<p>전남보성군 지방행정기 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용산구 근무를 명함.</p> <p>◎ 1973.12.1.</p> <p>경북포항시 지방행정 최상득 서기보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</p>
<p>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주사 임태손</p> <p>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.</p>	<p>5 호봉을 급함.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

경북경상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5 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명함.	장 소 수	전남구례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8 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명함.	이 체 윤
경북의성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 5 호봉을 급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.	김 병 선	경북김천시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조 승 희

서울특별시장

◎정 정

있으므로 이에 정정합니다.

1973.11.21자 시보(제 416 호)에  
게쳐된 규칙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

1973.11. .

서울특별시장

건 명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	비 고
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	공 포 번 호 제 1331 호	공 포 번 호 제 1330 호	표 지 4 페이지
서울특별시 시유재산심의회 규칙중 개정규칙	공 포 번 호 제 1330 호	공 포 번 호 제 1331 호	표 지 3 페이지